

파주시통·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아파트 신축으로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통·리를 아파트단지로 분리·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에 나가고자 신설되는 통·리에 대하여 통·리장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조리면 대원리 리장 정원 “3”을 “5”로, 금촌2동 통장의 정원 “11”를 “13”으로 하여 통·리장의 정원을 4명 증원(안 제2조)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통·리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통·리가 증설됨에 따라 통·리장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